

(사) 대한하키협회



★담당 최희진 사무처장 박신흠
협조자

시행 대한하키협회 - 13 (2017. 04. 03) 접수 ()
우 05540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테니스경기장 301호 / <http://koreahockey.co.kr>
전화 02)420-4267~9 /전송 02)420-4138 / korea-hockey@naver.com / 공개

대 회 요 강

1. 대회명 : 제36회 협회장기 전국 남·여 하키대회
2. 대회기간 : 17.4.29(토) - 5.6(토) (8일간)
(동 대회는 참가 팀 수에 따라 대회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3. 대회장소 : 충남 아산시 학선하키경기장
4. 참가범위 : 2017년도 본 협회 선수등록을 필한 남·여 중, 고, 대학, 일반부 단일팀
5. 참가신청 : 1) 온라인 신청 - <https://app.sports.or.kr/app/ho>
2) 신청서 마감 - 4.14(금) / 17:00 (도착분에 한함)
3) 참가신청 완료 후 대회참가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신청내역을 확인 후 직인을 찍어 본 협회로 팩스 제출(02.420.4138)
6. 참 가 비 : 고등부 - 10만원 / 대학·일반부 - 20만원
계좌번호 - 수협026-01-181085 (예금주 : 대한하키협회)
7. 특 전 : 본 대회 입상팀은 고교 및 대학진학의 특기자 혜택을 받는다.
8. 경기규칙 : (사)대한하키협회 경기규칙에 준한다.
9. 경기방법 1)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는 토너먼트방식으로 한다.
2) 일반부는 리그전으로 한다. 단, 5팀까지 풀리그, 6팀부터는 조별 리그 후 결선 토너먼트로 한다.
10. 대표자회의 일시 : 17. 04. 20(목) 14:00
11. 대표자회의 장소 : 서울 올림픽 파크텔 3층 회의실
12. 참가신청서에 선수 배번 및 유니폼 색깔(골키퍼 유니폼 포함)을 정확히 기재할 것.
13. 전년도 우승팀은 우승기를 반납하여야 한다.
14. 대회참가 신청후 배정된 유니폼 미착용 시 (조끼착용 및 코치/감독 순으로 해당경기 벤치퇴장) 단, 벤치에 지도자 1명의 경우(조끼착용 및 주장 10분 퇴장)
15. 전년도 우승팀은 감독자회의 때 우승기를 반납하여야 한다.
16.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후 통보한다.

대 회 규 정

- 제1조 본 대회는 제36회 협회장기 전국남·여 하키대회라 칭한다.
- 제2조 본 대회는 (사)대한하키협회가 주최한다.
- 제3조 본 대회는 매년 1회씩 개최하며, 대회일자 및 장소는 주최 측에서 결정한다.
- 제4조 본 대회 참가자격은 (사)대한하키협회 2017년도 선수등록규정에 의거 등록을 필한 단일팀이어야 한다.
- 제5조 본 대회 경기방식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는 토너먼트로 실시하며, 일반부 5팀까지는 풀리그, 6팀부터는 조별리그 후 결선 토너먼트로 한다.
- 제6조 본 대회 경기시간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총 60분(15분*4쿼터)으로 한다.
1. 무승부로 종료될 경우 페널티 슈트-아웃(Shoot-out) 5회를 실시하여 승자를 결정한다.
 2. 하프타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으며,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운영본부 경기감독관(저지 등)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3. 일반부 리그전 경기는 승자 3점, 무승부 1점, 패자 0점으로 채점하고 동점일 경우에는 (1)골득실차 (2)다득점 (3)승자승 순으로 하며 이 3가지가 같을 경우 페널티 슈트-아웃(Shoot-out)을 실시한다.
- 제7조 본 대회 경기 시작 시에 각 팀은 11명의 선수가 출전하여야 하며 경기진행 중에는 경기장에 최소 8명의 선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경기를 종료시킨다.
(이 경우에 상대팀에게는 득실 차이가 없을 경우 5:0으로 승리한 것으로 처리하고, 득점차가 발생 시에는 종료되는 시점의 득실에서 상대팀에게 5골을 가산한 점수로 승리한 것으로 처리한다)
- 제8조 본 대회 경기도중 일몰 또는 기타사유로 경기진행이 불가능할 시는 주최 측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갖되 득점차가 있을 시에는 잔여시간의 경기만,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시간의 경기를 갖는다.(페널티 슈트-아웃(Shoot-out)도 잔여경기 시간에 속함)
- 제9조 선수교체는 전 경기시간을 통해서 엔트리 18명 이내에서 수시로 교체할 수 있다.
- 제10조 경기도중 또는 종료 후라도 부정선수가 발각되었을 시는 성적여하를 막론하고 팀 실격으로 처리한다.
(경기 중 발각된 팀이 발생할 경우 상대 팀은 자동 승리한 것으로 간주함.)
1. 경기도중 집단적으로 경기장을 이탈 및 경기에 불응하여 심판이 경고한 후 지정한 시간 이내에 출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몰수게임으로 처리하며 본 협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몰수게임으로 처리 될 경우 그 대회 모든 성적은 무효 처리한다)
 2. 대회기간 중 엘로카드를 3회 당한 선수는 당해경기는 물론 다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3. 완전퇴장을 당한 선수는 당해경기는 물론 그 대회 잔여경기에 출전 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본 협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4. 벤치에서 퇴장 당한 지도자와 일시퇴장 및 완전 퇴장 선수는 개인상 수상 대상에서 제외 한다.
 5. 상기사항 이외 발생하는 사항은 “경기중 시행규칙”에 의거 처리한다.
 6. 본 대회 부정선수 및 경기(심판판정등)에 이의신청은 경기중 또는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에 육하원칙에 따라(단장, 부장, 감독 명의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7. 팀 벤치에 감독, 코치가 특별한 사유 없이 벤치를 이탈할 시는 “경기중 시행규칙”에 의거 처리한다.
- 제11조 본 대회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불참한 팀은 (사)대한하키협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12조 본 대회 우승 팀에게는 우승기를 수여하며 우승기는 차기 대회 시까지 보관하였다가 다음대회에 주최 측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보관도중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변상할 의무가 있다.
- 제13조 본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규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주최 측에서 추가 결정한다.